

규정심의위원회
의 결 서



규정심의위원회 의결서

재단법인 충남연구원 규칙제정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
부의된 연구윤리규칙 및 징계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안건에
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기로 한다.

2020. 3. 23

(재)충남연구원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오 혜 정

직 위	성 명	심의 결과		서명
		찬 성	반 대	
위 원 장	오 혜 정	○		
위 원	이 상진	○		
"	박 경 철	○		
"	조 영 재	○		
"	김 원 철	○		
"	이 민 정	○		
"	홍 원 표	○		
"	최 응 선	○		

규정심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

(2020. 3. 23)

① 연구윤리규칙 개정(수정 의결)

- 부의된 안건 중 아래와 같이 변경

“(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)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,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의 조치 및 제재를 행할 수 있고, 이에 대한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.”를 “(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)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, 연구부정행위의 경증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및 제재를 행하여야 하고, 이에 대한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.”로 변경
“훈계 및 경고”를 “훈계 또는 주의”로 변경

② 징계위원회 운영규칙 개정(부결)

- 징계양정기준은 직원신상과 관련된 민감한 규정으로,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협의가 필요